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용산예술교육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80
------	------

2020년 9월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20년 8월 21일
- 다. 상정결과 : 제29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0년 9월 3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문화본부장 유연식)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용산예술교육센터를 출연기관인 (재)서울문화재단이 전담 관리·운영함에 있어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의거, 사용료 면제를 추진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사용료 면제 공유재산 현황

- 소재지 : 용산구 한강로 3가 63-70
- 사용자 : (재)서울문화재단
- 사용허가 면적 : 토지 409.58 m^2 , 건물 연면적 4,026.24 m^2
- 사용허가 기간 : 2020. 9. 11. ~ 2023. 9. 10.(3년)

(2).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필요성

- ‘용산예술교육센터’는 디지털, 융·복합 등 미래수요에 맞춘 아동·청소년 특화 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 문화예술활동, 예술교육 수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市 출연기관인 서울문화재단의 고유사무로 운영할 예정
- 이는 서울문화재단 고유사무 수행에 따른 비영리사업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 상 면제요건에 충족하며,
- 유상사용 허가의 경우, 문화본부 세출(사용료 관련 출연금 편성)·세입(사용료 징수) 예산 간 상계가 반복되며 사용료 납부에 따른 부가가치세(국세) 지출이 발생하므로 사용료 면제가 타당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2020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20.7.16.)
 - 심의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2항제3호
 - 심의결과 : '적정'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 본 동의안은 2020년 10월 개관예정인 서울문화재단의 고유사무로 운영하고자 하는 '용산예술교육센터'의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 용산예술교육센터는 시장 요청사항('17.8.21.)에 따라 디지털, 융·복합 등 미래수요에 맞춘 아동·청소년 특화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임.

— 시장요청사항 ('17.8.21) —

서서울예술교육센터 등과 같이 맞벌이 가정 자녀(저소득층 포함) 대상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센터를 자치구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예술교육센터 공간 사용계획>

주요 공간		면 적	주요 용도
F동	컨시어지(1층)	992.18㎡ (중층구조)	환대의 공간, 프로그램 소개 등
	라이브러리(1.5층)		라이브러리 기능 서가 구성
G동	스튜디오1(5층)	916.74㎡	예술교육 LAB, 열린 작업실, 워크숍 및 프로그램 운영
	스튜디오2(6층)	992.㎡	다목적 홀(워크숍 및 프로젝트 진행), 사무실

- 문화본부는 용산예술교육센터 운영·관리를 서울문화재단의 고유사무

로 이관 후 건물과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문화본부 제출(사용료 관련 출연금 편성)·세입(사용료 징수) 예산 간 상계가 반복되고, 사용료 납부에 따른 부가가치세(국세) 지출부담 등이 발생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므로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출연기관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며,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인 바,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료 및 사용료 면제기간을 3년으로 함은 법령의 규정 내에 있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르면 공유재산 사용에 대해서는 그 목적과 기간, 사용료, 사용료 납부방법,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등을 명확히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문화본부가 제출한 동의안에는 소재지, 사용자, 사용허가 면적과 기간만을 명시하여 제출하였으므로 향후에는 조례를 준수하여 안건을 제출하도록 해야 할 것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 용산예술교육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내역 >

가. 사용료 면제 공유재산 현황

- 소 재 지 : 용산구 한강로 3가 63-70
- 사 용 자 : (재)서울문화재단
- 사용허가 면적 : 토지 409.58㎡, 건물 연면적 4,026.24㎡
- 사용허가 기간 : 2020. 9. 11. ~ 2023. 9. 10.(3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용산예술교육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안 번호	1780
----------	------

제출년월일 : 2020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용산예술교육센터를 출연기관인 (재)서울문화재단이 전담 관리·운영함에 있어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의거, 사용료 면제를 추진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면제 공유재산 현황

- 소재지 : 용산구 한강로 3가 63-70
- 사용자 : (재)서울문화재단
- 사용허가 면적 : 토지 409.58㎡, 건물 연면적 4,026.24㎡
- 사용허가 기간 : 2020. 9. 11. ~ 2023. 9. 10.(3년)

나.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필요성

- ‘용산예술교육센터’는 디지털, 융·복합 등 미래수요에 맞춘 아동·청소년 특화 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 문화예술활동, 예술교육 수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 출연기관인 서울문화재단의 고유사무로 운영할 예정

- 이는 서울문화재단 고유사무 수행에 따른 비영리사업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 상 면제요건에 충족하며,
- 유상사용 허가의 경우, 문화본부 세출(사용료 관련 출연금 편성)·세입(사용료 징수) 예산 간 상계가 반복되며 사용료 납부에 따른 부가가치세(국세) 지출이 발생하므로 사용료 면제가 타당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2020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20.7.16.)

- 심의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2항제3호
- 심의결과 : '적정'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 작성자 : 문화예술과 예술교육팀 전선미 (☎2133-2566)